

9월3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2369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525	495	98.9	98.9	19.9798	19.9798	제1종근린생활시설	1/0	보전녹지지역	20.09.17	반려	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	20206500000P002519	설계변경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37	6,039	1,829.58	2,840.21	30.2961	38.95	단독주택	2/	계획관리지역	20.09.17	조건부동의	옥탑면적 산정기준 검토 바랍니다. 옥탑부 벽체는 1/2 이상 개방하는 계획 바랍니다. 건축물은 2층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3	20206500000P002399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산 1-1	3,200	296.93	399.36	9.28	12.48	창고시설	2/	생산관리지역	20.09.17	반려	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	20206500000P002314	증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8-1	1,823	360.16	503.28	19.76	19.76	제2종근린생활시설	1/1	자연녹지지역	20.09.17	보류	함덕유원지 실시계획인가사항 변경 결과 제시 바랍니다.